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7. 24.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9일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7월 16일 제65회(임사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규제정비 표본조사(정비계획) 결과 통보(조직05090-224호, '99. 3. 17) 및 제3차 영등포구행정규제정비계획(기예 05090-939, '99. 3. 31)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보조금 교부 신청시 불명확한 내용 삭제(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 교부시 신청자에 대하여 상당율의 자체부담조건부여조항 삭제(안 제7조제1항)
  -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금지조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1, 2항에 기 명시되어 삭제(안 제10조)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시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시기를 “지체없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안 제13조제1항)
  - 보조사업자의 신고의무사유 발생시 신고기한을 “지체없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안 제16조)하고, 신고의무사유 중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동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전승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삭제(안 제16조제2호)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신청시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자에 대하여 상당율의 자체부담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제7조제1항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타용도 사용금지조항은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보조사업과 관련한 실적보고나 신고기한을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운영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 3.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년월일 : 1999. 7. 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규제정비 표본조사(정비계획) 결과 통보(조직05090-224호, '99. 3. 17) 및 제3차 영등포구 행정규제정비계획(기예05090-939호, '99. 3. 31)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보조금관리업무에 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보조금 교부신청시 불명확한 내용 삭제(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 교부시 신청자에 대하여 상당율의 자체부담 조건부여조항 삭제(안 제7조제1항)
-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금지조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1, 2항에 기명시되어 삭제(안 제10조)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시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시기를 “지체없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안 제13조제1항)
- 보조사업자의 신고의무사유 발생시 신고기한을 “지체없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안 제16조)하고, 신고의무사유중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동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전승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삭제(안 제16조제2호)
-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사유 중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재량행위 일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안 제17조제2호)하고,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는 “보조금의 사용내용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로 완화(안 17조제7호)

## 3. 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규제정비 표준안('99. 3. 17)
- 제3차 영등포구 행정규제정비계획('99. 3. 31)

## 4. 참고사항

- 합 의 사 항 : 없음
- 예 산 조 치 : 필요없음
- 개정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조항 내용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지체없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내용중 “지체없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제2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삭제한다.

제17조제7호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에서 “보조금의 사용내용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제1조 ~ 제4조(생략)	제1조 ~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신청)	제5조(보조신청)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1 ~ 5(생략)	1 ~ 5(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삭제”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 8(생략)	1 ~ 8(현행과 같음)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9. “삭제”
제6조(생략)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자체부담) 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u>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u>	제7조(자체부담)
②(생략)	① “삭제”
제8조 ~ 제9조(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용도의 사용금지) <u>보조사업자는 보조 금의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 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용도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u>	제8조 ~ 제9조(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2조(생략)	제10조(용도의 사용금지)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	“삭제”
..... 지체없이 .....	
②(생략)	
제14조 ~ 제15조(생략)	제11조 ~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 지체없이 .....	..... 15일 이내 .....
.....	②(현행과 같음)
1. (생략)	제14조 ~ 제15조(현행과 같음)
2. <u>사업을 폐지하였을 때</u>	제16조(신고).....
3 ~ 4(생략)	..... 15일 이내 .....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
.....	
.....	
1. (생략)	제1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
2. <u>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u>	.....
3. ~ 6(생략)	.....
7. <u>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u>	1. (현행과 같음)
8. (생략)	2. “삭제”
	3 ~ 6(현행과 같음)
	7. <u>보조금의 사용내용이 공공에 이바 지하지 아니하는 때</u>
	8. (현행과 같음)